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중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, 특별지원부문(운용기한: 2023.8.31일)을 상시화하는 등의 운용세칙(통화정책국) 개정을 반영

II 주요 개정 내용

- (전략지원부문 대상 조정) 미래성장유망산업·제조업내 5대 업종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벤처·혁신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, 스마트공장 협약과제 완료 기업의 지원부문을 혁신기업으로 변경
- (혁신기업 지원요건 강화) ① MAIN-BIZ(경영혁신형 중소기업) 기업을 창업 7년 초과 기업으로 한정하고 ②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 인증서 및 특허권·실용신안권 보유 기업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을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
- (창업·전입기업 지원대상 축소) 창업기업 소재지를 인천본부 관내로 한정하고 전입기업 지원대상을 3년 이내 제조업 영위기업으로 한정하여 창업·전입기업의 지원대상을 통일
- (기타 지원부문 조정) 정부의 최근 사업 변경과 현행 법령 등을 반영하여 수출관련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지원대상을 정비
- (운용기준 조문 정비) ①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대출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받을 수 있게 하며, ② 본부의 특별지원부문 운용기한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일반지원부문 전환 시 우선순위제를 명문화하고, ③ 자료제출일을 현행 매 익월 15일에서 12일로 변경함과 아울러, ④ 지원 제외 업종을 일부 추가하고 시설자금대출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운용기준 조문 전반을 정비

Ⅲ 시행일

□ 시행일 : 2023. 11. 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
- 다만, 특별지원부문 운용기한 관련 조항의 개정 부분은 9.1일부터 시행
- 시행일 전 이미 취급된 대출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. 다만, 만기 등 변동 사유 발생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